

```
1
                      _ 1
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1 1
 8 【 1
9 【 2
10 【
11 【
12 【
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 3
13 [
14 [
15 [
16 [
17 [
18 [
19 [
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1
 4
20 【가
21 【
22 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]
```

```
5
23 [ ]
24 [ ]
25 [ ]
25 [ ]
26 [ ]
27 [ ]
28 [ ]
29 [ ]
30 [ ]
31 [ ]
31 [ ]

6
32 [ ]
33 [ ]
34 [ ]
35 [ 7 |
36 [ ]
37 [ ]
38 [ ]

]
```

1. 2. 3. 4. 가

```
(
5.
6.
                  )
      가 1
      가 1
가
            가
17 (
                 )
   가 1 5
6 [
         1
7 [
      1
       가
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가
가
                 )
       (
2
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1
8 [ 1
(
       가
,
1
              가
 가
          )
```

```
가
  .( 1
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가
. 2
                      가
  21 (
  가
20 (가
2.
             )
          가
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가
가
9 【 2 2
               1
. , (
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1
10 【
  11 (
)
기
31 (
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가
```

1 가 ( ) 가 2 1 가 11 【 1 가 2 3 가 가 3

가

```
15
                  가
   2
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
                     )
12 【 11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가
,
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+1%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) 3 , 8
, 20 (가
)
                 21 (
                 (
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13 【
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```

)

```
1.
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5
   가
             2( )
2.
          가
          가
3.
          가
4.
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가
      6
          가
5.
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가
      3
14 【
                      2
3
          가
        ·
) 2
가
13 (
                    3
  27 (
 가
  13 (
               ) 4 , 5
180
```





4 6 가 100% ,

```
1
13 (
 가
1
1
 가
15 【
                1
         가
  가
1. 가
       가
   )
       2
       가
3. 1
             가
3. 1 3
```

)

가

가

가

```
20 (가
가
22 【
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가
2 (
            110 (
         가
   가
         가
(
   5
)
5
23 【
         1
             가
1
가
             가
      가
13 (
,
24 【
               2
```

```
】
가 2
25 【
                        가
가
  1
  가 2
.
     13 (
가
26 【
                      1
27 【
                     1
1.
2.
3.
4.
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가
5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2
28 【
```

```
27 (
                   ) 1
         3
          10
                 21 (
              가
가
  7
                가
29 ( (
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13 (
   ) 2
[ 13 (
             1
  28 ( )
```

, 10

6

32 [ ]

.

•

## (별표1) 보험금 지급기준표

(기준 : 계약보험가입금액 2,500만원)

## ① 확정보험금 (약관 제13조 제1호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지 급 사 유   | 지 급 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5년확정보험금<br>(I 형에 한함) | 피보험자가 계약<br>일로부터 만5년<br>이 되는 계약해<br>당일에 살아있을<br>때 | 2,000만원 |
| 만기 확정보힘금<br>(Ⅱ형에 한함) | 피보험자가 보험<br>기간이 끝날때까<br>지 살아있을 때                  | 2,000만원 |

## ② 재해사망보힘금 (약관 제13조 제2호)

|   | 지급사유  | 보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<br>여 사망하였을 때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N | 지 급 액 | 2,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③ 일반사망보험금 (약관 제13조 제3호)

| 지급사유 |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<br>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급 액 | 만 2년미만<br>경과시                       | 250만원 + 이미<br>납입한 보험료 |  |
|      | 만 2년이상<br>경과시                       | 2,500만원               |  |

## ④ 장해급여금 (약관 제13조 제4호)

| 지급사유  |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<br>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<br>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<br>해상태가 되었을 때 |         |  |
|-------|---|---------|--|
|       | 제1급   | 2,500만원 |  |
|       | 재해 제2급  | 1,000만원 |  |
| 7 7 0 | 재해 제3급  | 800만원   |  |
| 지급액   | 재해 제4급  | 600만원   |  |
|       | 재해 제5급  | 400만원   |  |
|       | 재해 제6급  | 200만원   |  |

## ⑤ 소득보상금 (약관 제13조 제5호)

| 지급사유 |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<br>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<br>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<br>해상태가 되었을 때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| 제1급   | 매월 200만원씩 36회 지급 |  |
| 지급액  | 재 해<br>제2급  | 매월 100만원씩 36회 지급 |  |
|      | 재 해<br>제3급  | 매월 50만원씩 36회 지급  |  |

주) 소득보상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

## (별표2) 재해분류표

에 의한 것임

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(다만,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중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아니함)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\*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1993 -3호, 1995 11 시행)중 "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"

#### <u>분 류 항 목</u>

| 분 류 항 목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       | V01 - V09 |
| 2.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  | V10 - V19 |
|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   | V20 - V29 |
| 숭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   | V30 - V39 |
| 탐숭자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숭용차 탑승자     | V40 - V49 |
|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릭 또는    | V50 - V59 |
| 밴 탑승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   | V60 - V69 |
| 승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    | V70 - V79 |
| 9. 기타 육상운수 사고 (철도사고 포함) | V80 - V89 |
| 10 수상 운수사고              | V90 - V94 |
|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       | V95 - V97 |
|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    | V98 - V99 |
| 13. 추락                  | W00 - W19 |

|     | 분 류 항 목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4  |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    | W20 - W49 |
| 15  | 생물성 기계직 힘에 노출       | W50 - W64 |
| 16  | 불의의 익수              | W65 - W74 |
| 17  |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      | W75 - W84 |
| 18  | 전류,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| W85 - W99 |
|     | 압력에 노출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9  | 연기, 불 및 화엽에 노출      | X00 - X09 |
| 20  |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   | X10 - X19 |
| 21  |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   | X20 - X29 |
| 22  | 자연의 힘에 노출           | X30 - X39 |
| 23  |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 | X40 - X49 |
|     | 노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24  |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| X58 - X59 |
|     | 노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25  | 가해                  | X85 - Y09 |
| 26  | 의도 미확인 사건           | Y10 - Y34 |
| 27  |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       | Y35 - Y36 |
| 28  |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,   | Y40 - Y59 |
|     |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      |           |
| 29. |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 | Y60 - Y69 |
|     | <b>개</b> 난          |           |
| 30. |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| Y70 - Y82 |
|     | 에 의한 부작용            |           |
| 31  |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| Y83 - Y84 |
|     |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|           |
|     |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|           |
|     | 내과적 처치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32  |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|           |
|     | 에 규정한 질병            |           |

.

#### ※ 제외사항

- "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"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(L233)
- "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,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"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OO ~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
- "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"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
- "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"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
- "익수,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"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
- "기타 불의의 사고"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
- "법적 개입"중 처형 (Y355)

## ( 별표3 ) 장해등급분류표

| = - | ા જો અ સ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|
| 등 급 | 신 체 장 해   |
|     |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었을 때  |
|     |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 · 홈 ·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혜를 남겨서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_   |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급 |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, 한다리의 발목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이상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, 한다리를 완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, 한팔을 완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 횽·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<br>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|
|     | - 풋하게 되었을 때<br> 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      |
| 제2급 | 4 10근/대학을 뚫었거나 원선 경기의 사동아<br>  - 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|
|     | - ^ ^ 듯하게 되었을 때<br> 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|
|     |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되었을 때   |
|     |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등 급 | 신 체 장 해  |
|-----|--|
|     |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급 |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를 영구히 남겼을 때(추간판탈출증은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<br>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     |
| İ   | 제4급의 3 또는 6의 전체정해가 결정<br>하였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İ   | 1   남겼을 때  |
|     |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영구히 남겼을 때  |
|     |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개 되었을 때<br>4 · 홍·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              |
|     | 4 용·목구 장기에 주었만 장에를 담겨서 청<br> 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|
| 제4급 | 거나,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,   | 기다, 6학 교원을 많았을 때<br>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       |
|     |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등 급     |  | 신 체 장 해   |
|---------|--|---|
|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못하게 되었을 때   |
|         |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못하게 되었을 때   |
|         |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제4급     |  | 되었을 때   |
|         |  |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<br>로 어그림 나건의 제(초기제타추즈의 제이) |
|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를 영구히 남겼을 때(추간판탈출증은 제외)<br>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           |
|         |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도의 구간관일률이<br>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$\begin{vmatrix} 1 \\ 2 \end{vmatrix}$ | 하관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달러 3대단달등 2단달러 기하게 다쳤던<br>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|
|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었을 때  |
|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11c-24 |  |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급  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|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<br>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7. 7. 7. 7. 1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<br>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|
|         |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시 4월77탁을 뚫었을 때<br>누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        |
|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기의 정력에 구성한 경에를 경기에 금었<br>을 때                     |
| L       |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글 베</b>  |

| 등 급 |     | 신 체 장 해  |
|-----|-----|--|
|     | 12  |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3  |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급 | 14  |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를 영구히 남겼을 때(추간판탈출증은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5  |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6  | 중도의 추간판탈출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   |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İ   |     | 을 때  |
|     | 2   |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   | <b>-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١.  |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   |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_   | 되었을 때<br>하손의 첫제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               |
|     | ٦   | 안근의 첫째근기록 또는 날쌔근기록을<br>와저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|
|     | 6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0   | 한군의 첫째근기의 또는 날째근기의을 또<br>합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|
|     |     |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급 | 7   | 하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Ι΄. |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    | 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8   |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   |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]   |     | 잃었을 때  |
|     | 10  |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1  |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2  |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3  |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   | 14  |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•

#### (장해등급분류해설)

-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
  - 가 장해의 정의

장해란 계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

- 나 평가기준
-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
- 교 기정인기 실제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(A M A)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(불임 「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」참조, 이하 같다)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, 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
- 2 "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"

글 3 성을 기는 0 - 1 시 시 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(훤체어, 목발 등)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일상생활의 기본동작

- (1) 이동동작
- (2) 음식물 섭취동작
- (3) 옷 입고 벗기 동작
- (4) 배변, 배뇨 또는 그 뒷처리
- (5) 목욕
- (3) 국국 3 "항상간호"

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(1) 의 이동동작 재한을 포함하고, (2) 내지 (5)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,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, (1)의 이동동작 재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

- 4 "수시간호"
  - "수시간호"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
    - 1)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(1)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, (2) 내지 (5)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,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, (1)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(휠체어

등)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

2) 심장,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

#### "시력을 잃은 것"

시되를 잃는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 단, 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,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

6 "시력의 뚜렷한 장해"

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, 굴절 장해, 안구운동 장해, 조절 장해,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

- 7 "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" 가 "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"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
  - 1)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(ㅁ,ㅂ, 교), 치설음(ㄴ,ㄷ,ㄹ),구개음(ㅈ,ㅊ),후두음 (ㅇ.ㅎ)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
  - 되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
  - 3)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
  - ' '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' 물이나 유동식(미음 등)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

#### 8 "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"

- 가. "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"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, 치설음, 구개음,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
- "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"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

우를 말한다

"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" 주파수 500, 1000, 2000,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, b, c, d 데시벨(청력검사 단위)로 했을 때 1/6(a+2b+2c+d)의 값이 80네시벨 (청력검사 단위)이상 (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)으로서 희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다

"청력의 뚜렷한 장해"

말하다

- "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"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
- 12 "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"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,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(팔은 어깨관절, 팔꿈치 관절, 손목, 다리는 골반 관절, 무릎, 발목)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(인공관절 포함)에도 이에 준한다
- 13 "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"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/2이하로 제한되거나,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혜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(Σ 운동준보호 장희후 운동범위 × 비례치)이 1/2이하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
- "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" 피보험자의 착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
  - 판단한다 가 "척추의 고도의 기형"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°이상의 후만증 또는 20°이상의 측 만(側灣)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
  - 나. "척추의 중도의 기형"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°

이상의 후만증 또는 10°이상의 측만(側彎)변형이 있는 자,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%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

열면 자들 할만지 다 "척추의 경도의 기형"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대에서 후만중 또는 축만(側灣)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

라 "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" 경추,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/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

마 "최추의 중도의 운동장해" 경추,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최추에 대 해서 돌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/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

\* "착추의 경도의 운동장해"
 경추, 흉추 또는 요추 중 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/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

#### 15 "손가락의 장해"

- '손가락을 잃은 것'
 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(끝에서 첫째마디),
  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(끝에서 둘째마디)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
- (소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"
   1)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(끝에서 첫째 마디) 하방의 1/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(끝에서 마지막 마디)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/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
- 2)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(끝에서 첫째마디)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

(끝에서 마지막 마디)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(끝에서 둘째 마디)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/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

#### 16 "발가락의 장해"

가 "발가락을 잃은 것"

발가락 전부(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) 를 잃은 것을 말한다.

- 나 "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"
  - 1)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(끝에서 첫째 마디) 하방의 1/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(끝에서 마지막 마 디)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/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
  - 2)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(끝에서 첫째마디)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(끝에서 마지막 마디)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(끝에서 둘째 마디)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/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

###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

가.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 는 직경 5㎝ 이상의 추상반혼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

나. 추상

두경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물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혼이나 함물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

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

8기8기 8기기 8세 음경의 결손, 반혼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(陰痿 발기부전)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

19 추간판탈출증

추간판탈출중, 팽윤, 파열 등은 의학적 인상중상 과 특수검사(CT, MRI, 근전도 등)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중상을 인정하며,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, 후유중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
가 "고도의 추간판탈출증"

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

- 나 "중도의 추간판탈출증"
-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,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,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
- 선정근의 불완선하이가 현정되는 경구

 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최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
- 다 "경도의 추간판탈출증"
- 갑각이상 · 요통 ·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

#### 20 "신체의 동일부위"

-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(손가락, 손목 이하, 팔꿈치 이하, 어깨 이하)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
-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(발가락, 발 목 이하, 무릎 이하, 골반 이하)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
-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
- 라 최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
-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,6,7,8,9, 제2급의 3,4,5,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, 두다리, 한팔과 한다리,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마 한다

- "영구히" "영구히" 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
- 가.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
- 대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
-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

| (붙임) | <u>신체의</u> | 제관절 | <u>정상각도</u> |
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
| (重日)          | 인세크 세트로 885도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운동의 종류               | AMAU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부 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정<br>각<br>도      | 정상운동<br>범 위 | 비례치<br>(%) |
| 경 부           | 전굴<br>후굴             | 30<br>30         | 60          | -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좌굴<br>우 <b>굴</b>     | 40<br>40         | 80          | -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좌회전<br>우회전           | 30<br>30         | 60          | -          |
| 홍요부           | 전굴<br>후굴             | 90<br>30         | 120         | <u>-</u>   |
|               | 좌굴<br>우굴             | 20<br>20         | 40          | -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좌회전<br>우회전           | 30<br>30         | 60          | _          |
| 어깨관절          | 신전(후방거상)<br>굴곡(전방거상) | 40<br>150        | 190         | 50%        |
|               | 내회전<br>외회전           | 40<br>90         | 130         | 20%        |
|               | 외전(측방거상)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| 150         | 30%        |
| 팔굽관절          | 신전<br><b>굴</b> 곡     | 0<br><b>1</b> 50 | 150         | 60%        |
|               | 회내<br>회외             | 80<br>80         | 160         | 40%        |
| 팔목관절          | 신전<br>굴곡             | 60<br>70         | 130         | 70%        |
|               | 요굴<br><b>척</b> 굴     | 35<br>45         | 80          | 30%        |
| 대퇴관절          | 신전<br>물곡             | 30<br>100        | 130         | 33%        |
|               | 내전<br>외전             | 20<br>40         | 60          | 33%        |
|               | 회내<br>회외             | 40<br>50         | 90          | 33%        |
| 무릎관절          | 신전<br>물곡             | 0<br>150         | 150         | 100%       |
| 발 <b>목</b> 관절 | 신천<br>골곡             | 20<br>40         | 60          | 70%        |
|               | 내반<br>외반             | 35<br>25         | 60          | 30%        |

<sup>-</sup> 주운동방향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- 정상각도 운동충류에 따른 가능 크기 - 정상운동범위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- 비례치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

## (별표4) 악성신생물 분류표

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(통계청 고시 제1993-3호, 1995 1 1 시행)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

| 대상 악성 신생물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입술,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| C00 - C14 |
|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       | C15 - C26 |
|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  | C30 - C39 |
| 생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| C40 - C41 |
|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  | C43 - C44 |
| 생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  | C45 - C49 |
|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         | C50       |
|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    | C51 - C58 |
|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    | C60 - C63 |
|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        | C64 - C68 |
| 11 눈,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| C69 - C72 |
| 위의 악성신생물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 | C73 - C75 |
| 신생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 | C76 - C80 |
| 위의 악성신생물              | BO4 600   |
| 14 림프,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 | C81 - C96 |
| 신생물                   | C077      |
| 15. 독립된(원발성) 다발성 부위의  | C97       |
| 악성신생물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재테크안심저축보함 암치료보장특약 약관

```
1
             1
1
1
              1
2 7 [
8 [
9 [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3
10 [
11 [
12 [
13 [
14 [
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1
1
1
             ]
4 가
15 【
                    ]
5
16 【
17 【
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1
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```

```
1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90
7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1 [ ]
```

```
9 [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) 2
 3
                         1
 10 【
 ( 2
            (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
with malignant potential) 2
                (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
cell carcinoma)
가
                3 ,
. ( , 3
1. 3
                   3(3
 2.
                      4(
```

condition

condition

(Premalignant

with malignant

```
potential)
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hemic
        (fixed tissue)
system)
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가
가
11 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5
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(fixed tissue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hemic
system)
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가
12 【
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가
.
1.
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1 (
         2
```

: 2. 가

1 (

31 1 (

31 :

13 [ ]

12 ( ) 1

•

180

12 (

```
14 [ ]
4 가
15 [ ]
                   20 (가
)
     ) 21 (
· ,
가
                   180
5
16 【
             1
1.
2.
3.
4.
           가
           1 2
                     3
```

( 12 2 )

| 가 1 (<br>) 2<br>, | 1<br>100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
| 1  |
|----|
| 40 |
|    |

( 12 3 )

|     | 가 |   |   |   |   |
|-----|---|---|---|---|---|
|     |   |   | 4 |   |   |
| 1 ( |   | ) | 2 | 3 |   |
|     |   |   |   | 1 | 3 |
| , 4 |   |   |   |   |   |
|     |   |   |   |   |   |

( 12 4 )

| ) | 가<br>2 | 1 | (  |          |
|---|--------|---|----|----------|
|   |        | , | 31 | 1<br>100 |
|   | 가      | , | 31 | 1        |
|   |        |   | 31 | 40       |

```
( 2) ______

3

( 1993-3 , 1995. 1. 1 )
```

| 1. ,    | C00 - C14 |
|---------|-----------|
| 2.      | C15 - C26 |
| 3.      | C30 - C39 |
| 4.      | C40 - C41 |
| 5.      | C43 - C44 |
| 6.      | C45 - C49 |
| 7.      | C50       |
| 8.      | C51 - C58 |
| 9.      | C60 - C63 |
| 10.     | C64 - C68 |
| 11. ,   | C69 - C72 |
| 12.     | C73 - C75 |
| 13.     | C76 - C80 |
| 14. ,   | C81 - C96 |
| 15. ( ) | C97       |

( 3) <u>3</u>
3 3 3
1993-3 1995. 1. 1
)

| 1. | C 16 |
|----|------|
| 2. | C 22 |
| 3. | C 23 |
| 4. | C 24 |
|    |      |
| 5. | C 33 |
| 6. | C 34 |
|    |      |

```
3
3
1993-3 , 1995.1.1 )
                         (
```

| 1. | C 50 |
|----|------|
| 2. | C 51 |
| 3. | C 52 |
| 4. | C 53 |
| 5. | C 54 |
| 6. | C 55 |
| 7. | C 56 |
| 8. | C 57 |
|    |      |
| 9. | C 58 |

| 1. , | D 00 |
|------|------|
| 2.   | D 01 |
|      |      |
| 3.   | D 02 |
| 4.   | D 03 |
| 5.   | D 04 |
| 6.   | D 05 |
| 7.   | D 06 |
| 8.   | D 07 |
| 9.   | D 09 |
|      |      |

\*

•

```
1
1
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(
2 7 [
8 [
9 [
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1 1
3
10 [
11 [
12 [
13 [
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 ]
]
            ]
4
14 【
15 【
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]
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```

```
1
1 [
                 1
가
가
(
,
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가
2 [
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1
з [
 4 【
               1
           .
가
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가
13 (
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```

9 [

```
(
 3
                        )
10 [
             1
          가 (
가
가
                         )
3
                 1
11 [
   ( 2
                  ) )
12 [
                  1
가
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120
```

가 2

3 180 가 3 . ( 3 가 11 ( 가 가 13 【 1 4 14 【 1 ) 1. 2. 3. 4. (

)

| 5.      |   | 가            |   |   |   |  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
|         |   | ,            | 1 | 2 |   | 3 |
| 15      | ľ | 14 (         | 1 |   | , | ) |
|         | , | 10<br>1<br>7 |   |   |   |   |
|         | 1 | +1%          | 가 |   |   |   |
| 5<br>16 | ľ |              |   |   |   | 1 |
|         |   |              |   | 가 |   |   |

( 1)

| 3 | 가<br>1/1000 |
|---|-------------|

( 2) \_\_\_\_\_\_

|        |   |   |   | 100 000  |
|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|
| •      |   |   |   | A00-B99  |
|        |   |   |   | C00-D48  |
|        |   |   |   | D50-D89  |
|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|
| . ,    |   |   |   | E00-E90  |
|        |   |   |   | G00-G99  |
|        |   |   |   | H00-H59  |
|        |   |   |   | H60-H95  |
|        |   |   |   | 100-199  |
|        |   |   |   | J00-J99  |
| XI.    |   |   |   | K00-K93  |
| x .    |   |   |   | L00-L99  |
| x .    |   |   |   | M00-M99  |
| x .    |   |   |   | N00-N99  |
| XV.    |   |   |   | 000-099  |
| χ .    |   |   |   | P00-P96  |
| x .    |   |   |   | R00-R99  |
| ^ .    |   |   | , | 100-1099 |
| XIX.   |   |   |   | S00-T98  |
| ΛΙΛ. , |   |   |   | 300-196  |
| VV     |   |   |   | V04 V00  |
| XX.    | _ |   |   | V01-Y98  |
| •      | 2 | 1 | 1 |          |
|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|
| •      |   |   | , |          |
|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|

4

.

( 3)

( 2)

| * |  |  |
|---|--|--|
|   |  |  |
|   |  |  |
|   |  |  |

```
1
  1 [
2 [
3 [
4 [
5 [
6 [
 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1 1
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1
2 7 [
8 [
9 [
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
3
10 [
11 [
12 [
13 [
14 [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]
5
15 【
16 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1
6
17 [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```

1
5 [ ]
7 [ ]
8 [ ]
1

**[** 

13 【 가 가

1. 가 , 가

2. 가 , 가

1. 1 1

2. 1 2

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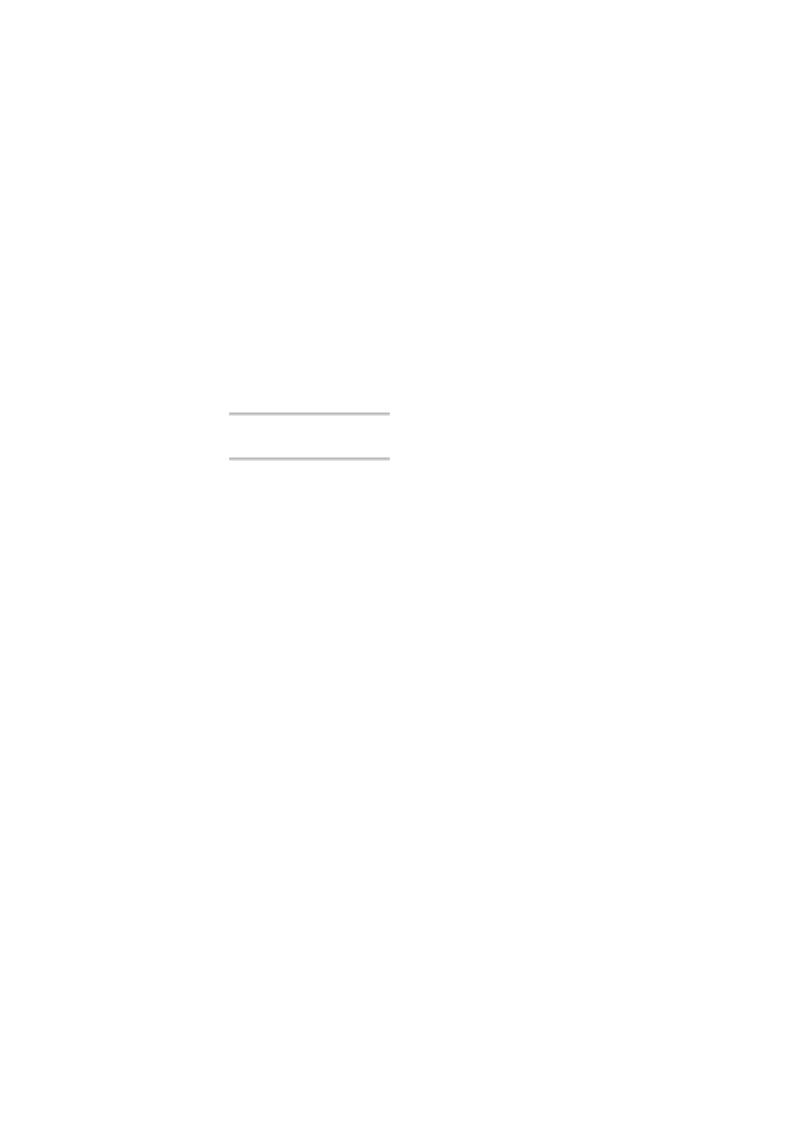
```
14 [ ]
4
15 【
               1
    ( )
1.
2.
3.
4.
   )
가
5.
           1 2
                    3
2
    15 (
16 【
     3
                   10
```

7†
1
+1%
5
17 [ ]

. 가

10,000

```
(
     2)
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00 - B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00 - D 4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50 - D 8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00 - E 9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00 - G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00 - H 5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60 - H 9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00 - I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 00 - J 99
K 00 - K 93
L 00 - L 99
M 00 - M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00 - N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0 - 0 9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00 - P 9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 00 - R 99
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)
   1.
                (
    2.
    3.
    4.
    5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),
```



```
1 [ ]
2 [ ]
3 [ ]
4 [ ]
5 [ ]
6 [ ]
```

```
)
.
1. (
가 가
가. 1 ( ):
. 2 ( ): 1
2. (
가 5 .
2 [ ]
3 [
    】
가
4 [ ]
        ) >|-
```

가 가 . 1 5 **[** 가 가 가 1. 2. · 가 3. 1 ( 가 5 2 , 3 6 1 1 가 1 가 6 **[** 1

```
1 [ ]
2 [ ]
3 [ ]
4 [ ]
5 [ ]
```

```
1 [
            1
            (
가
                       2
가
        (
                (順延)
                           )
2 [
            1
            1
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1,2
1.
   2 (
                1
2.
```

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· :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재산된 금액으로 하며, 니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-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.
-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정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

## 5 [ ]

① , :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.

② 이 독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